
		<h1>보도자료</h1> <p>2021. 10. 13.(수) 배포</p>			
보도일	<p>2021. 10. 14.(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0. 13.(수) 12:00 이후 보도 가능</p>				
담당과	대입정책과	담당자	과장 조훈희 (☎ 044-203-6368) 서기관 신민규 (☎ 044-203-6367) 교육연구사 김도균 (☎ 044-203-6366) 교육연구사 심대현 (☎ 044-203-6679)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 작년 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 발생
-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 ◆ 수험생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철저한 숙지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

-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현황 >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전자기기 소지	종료령 후 답안 작성	기타*	계
111건	59건	52건	10건	232건

*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 소지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변화된 시험 환경으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장 환경 조성

-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 각 시험장마다 시험실(교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실에 비치된 기존 기자재나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수험생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 각 시험장마다 지역 내 경찰력을 지원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여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

-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필요
-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에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4교시 응시방법 준수

- 수능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므로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한다.

-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 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11.4.)부터 수능 당일(11.18.)까지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자 조치

-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시험 사후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며,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 또한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책자 등의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 부정행위 관련 세부 내용을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에 자세히 담아 10월 중에 각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으로 안내한다.
 - 또한 고3 재학생 이외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붙임】 1.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2.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
3.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부정행위 유형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 (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및 제8조

 부정행위 적발 사례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례 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 2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 3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 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 5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부정행위 적발 사례②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 6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부정행위 적발 사례③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 과목씩 차례대로 응시해야하며, 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7-1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7-2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8-1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사례8-2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삭제 또는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부정행위 적발 사례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9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수능 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경찰 수사, 재판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되었음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1	4교시 탐구 영역(사회·과학·직업)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정자로 작성
↓	
2	4교시 탐구 영역(사회·과학·직업)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빼냄
↓	
3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 기재
↓	
4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	
5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

☞ 올해부터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서로 분리되어 각각 제공됨